

의안번호	2218138
의 퇴 인	허영의원
회 답 일	2026.8.31.
추계번호	26D195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억 8,2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억 7,600만원(연평균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각종 계획 수립 (안 제 34조의15 등)	282	-	-	94	-	376	75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주민자치 조직 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정함	재량규정
2	안 제17조의2, 안 제17조의5 (혁신도시 개발 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에 대하여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34조의2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의 수행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34조의5, 안 제34조의8, 안 제34조의9, (에너지 자립도 시 조성 등)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자치도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희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량규정

		여 강원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음	
5	안 제34조의10, 안 제34조의11, 안 제34조의12, 안 제34조의14, 안 제34조의15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시설 및 연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하여야 함 -국가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강원자치도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34조의17, 안 제34조의19, 안 제34조의20, 안 제34조의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 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44조의3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45조의2, 안 제48조의10, 안 제48조의14, 안 제48조의16, 안 제48조의21,	-도교육감은 도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선발기준 등을 달리하는 특별전형(特別銓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이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48조의22, 안 제48조의23, 안 제48조의24, 안 제48조의25, 안 제48조의26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학교의 장이 국제학교 학생을 위하여 마련한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관할 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도의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9	안 제51조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56조의2, 안 제57조의2, 안 제57조의3, 안 제57조의8, 안 제57조의9, 안 제57조의13 (산촌활성화지원 센터 지정에 관 한 특례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 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기금운용 시,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자금,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	--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1	안 제58조의2, 안 제58조의3, 안 제58조의4, 안 제58조의5,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등)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음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가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강원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58조의7, 안 제58조의8, 안 제58조의9, 안 제58조의10, 안 제58조의13,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사항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58조의15, 안 제58조의16, 안 제58조의17,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등)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강원자치도는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및 도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등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음 -정부와 도지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음 -국가, 강원자치도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61조의2, ~안 제61조의5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	-도지사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지사는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재량규정

	가 등에 관한 특례 등)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중전의 강원자치도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강원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해당 지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14	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4, 안 제73조의7, 안 제73조의8, 안 제73조의9, 안 제73조의11, 안 제73조의12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국가는 강원자치도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는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	재량규정

		점으로서 강원자치도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15	안 제73조의16, 안 제73조의17, 안 제73조의18, 안 제73조의19, 안 제73조의22, 안 제73조의23, 안 제73조의26,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함 -국가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량규정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강원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6	안 제73조의29 ~안 제73조의3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전력 공급 시설, 용수 공급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 및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음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73조의34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73조의37, 안 제73조의39, ~안 제73조의41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고,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9	안 제73조의44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을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73조의49, 안 제73조의52, 안 제73조의53, 안 제73조의54, 안 제73조의55 (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 등)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등을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재량규정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지역투자공사가 도내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21	안 제73조의57, 안 제73조의58, 안 제73조의59, 안 제73조의60, 안 제73조의62, 안 제73조의63,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확충, 청년 주거공간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민복지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내 관할지역을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도지사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강원자치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음 -국가, 강원자치도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73조의65, 안 제73조의66	-도지사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의 사	재량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와 도지사는 도내 전통시장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음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의2(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	○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17조의2, 안 제17조의5(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자치도 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등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3	안 제34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	○ 개정안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내용 및 범위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4	안 제34조의5, 안 제34조의8, 안 제34조의9, (에서지 자립도시 조성 등)	×	○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 등의 내용 및 범위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5	안 제34조의10, 안 제34조의11, 안 제34조의12, 안 제34조의14, 안 제34조의15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O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지원 대상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시설의 범위,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6	안 제34조의17, 안 제34조의19, 안 제34조의20, 안 제34조의2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등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단지 또는 지구를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각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44조의3(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	○ 특수학교 또는 분교장 설치 범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8	안 제45조의2, 안 제48조의10, 안 제48조의14, 안 제48조의16, 안 제48조의21, 안 제48조의22, 안 제48조의23, 안 제48조의24, 안 제48조의25, 안 제48조의26 (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추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51조의3,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56조의2, 안 제57조의2, 안 제57조의3, 안 제57조의8, 안 제57조의9, 안 제57조의13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추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58조의2, 안 제58조의3, 안 제58조의4, 안 제58조의5,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등)	O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취득세·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외국 선박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각종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2	안 제58조의7, 안 제58조의8, 안 제58조의9, 안 제58조의10, 안 제58조의13, 안 제58조의15, 안 제58조의16, 안 제58조의17,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등)	O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61조의2, ~안 제61조의5(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4	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4, 안 제73조의7, 안 제73조의8, 안 제73조의9, 안 제73조의11, 안 제73조의12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O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5	안 제73조의16, 안 제73조의17, 안 제73조의18, 안 제73조의19, 안 제73조의22, 안 제73조의23, 안 제73조의26,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추정하기 어렵고,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6	안 제73조의29 ~안 제73조의3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7	안 제73조의34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미대상: -현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¹⁾ 」은 정부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²⁾ 」는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8	안 제73조의37, 안 제73조의39, ~안 제73조의41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개정안은 도매시장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 관련,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기금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73조의44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O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0	안 제73조의49, 안 제73조의52, 안 제73조의53, 안 제73조의54, 안 제73조의55(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지원 대상인 지역투자공사의 설립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립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1	안 제73조의57, 안 제73조의58, 안 제73조의59, 안 제73조의60, 안 제73조의62, 안 제73조의63,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등)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22	안 제73조의65, 안 제73조의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례 등)	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재정적 지원 관련) ○ 개정안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골목형 상 점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이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현 시점에서 지원 범 위,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안 제34조의15에 따른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안 제58조의3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안 제58조의7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73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 안 제73조의44에 따른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안 제73조의65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추계함
 -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23)」 연구용역비 64백만원,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2024)」 연구용역비 32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빗공해방지 종합계획 수립(2024)」 연구용역비 44백만원의 평균액 47백만원을 2024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적용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계획별 수립주기는 다음과 같이 가정
 -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3년(개정안 근거)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5년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5년(개정안 근거)
 - 문화예술진흥계획: 5년(개정안 근거)
 -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5년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1	2.3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3년⁴⁾
- 위 수립주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 및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은 2028년에 수립,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1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가. 각종 계획 수립(안 제34조의15, 안 제58조의3, 안 제58조의7, 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44 및 안 제73조의65)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각종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평균금액을 적용함
 - 연구용역비 평균금액 4,700만원을 2024년 금액으로 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8년 5,1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문화예술진흥계획 및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은 추계기간 중 2028년에 1회 수립,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8년과 2031년에 각 1회씩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억 8,200만원 등 5년간 3억 7,600만원으로 추계됨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주기 3년을 참고하여 가정함

[표 2] 각종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안 제34조의15)	47	-	-	47	-	94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안 제58조의3)	47	-	-	-	-	47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 (안 제58조의7)	47	-	-	-	-	47
문화예술진흥계획 (안 제73조의2)	47	-	-	-	-	47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안 제73조의44)	47	-	-	-	-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안 제73조의65)	47	-	-	47	-	94
합 계	282	-	-	94	-	3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